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2. 13.(목) 10:00

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70호
- 나. 제 출 자 : 장규권 의원, 고영찬 의원,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2. 제안이유

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,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1인가구 지원사업 위탁 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.
- 나.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신설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5. 2. 4. ~ 2. 10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1 인 가 구 지 원 사 업 을 사 무 위 탁 할 경 우 투 명 하 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,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

나. 주요 내용

1) 1인가구 지원사업 위탁 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.

2)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신설).

-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·점검을 하고,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1인가구 사업을 위탁할 경우 관련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도·점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책 시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건강가정기본법

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17호, 2024. 3. 26., 타법개정]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